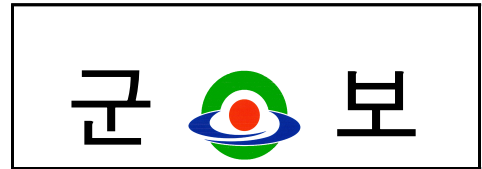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50호 2020. 9. 7.(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 공고 제2020-1119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예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위원장은 군수가 되도록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체 위원 변경 (안 제3조)

- 당연직 위원 및 공동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

나. 협의체 운영지원 사항 추가 (안 제15조)

-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여 및 사용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의뢰 예정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주민복지실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ycgm369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주민복지실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전화 : 054-650-6207, 팩스 : 054-650-6360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군수·주민복지실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을 “군수·주민복지실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군수와 위촉직 위원 1명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 중 “보조하며”를 “보조하고”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를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u>위원장</u> 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u>공동</u> <u>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u> ----- -----.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② ----- ----- ----- ----- -----
<u>부군수·주민복지실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u> 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u>군수·주민복지실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u> ----- -----.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③ <u>군수와 위촉직 위원 1명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으로</u>
<u>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1명</u> 을	<u>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u>
<u>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u>	<u>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④ ~ ⑨ (생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u>보조하며</u> ,	----- <u>보조하고</u>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u>필요한 사항을</u>	----- <u>국유·공유 재산</u>
<u>지원할 수 있다.</u>	<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u>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